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의 입장

1. 관련 법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립대학 회계법)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 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3.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2.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 지급의 역사적 배경

- 교육, 연구, 학생지도 비용(이하 교연비)는 국립대학 교원의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었던 ‘기성회회계 정액연구비’에서 전환된 것임.
- 2015년 기성회회계의 폐지로 인해 ‘정액연구비’의 지급 근거가 사라지자, 대안으로 교연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국립대학 회계법에 포함시킴.

3. 시행 규칙의 주요 문제점

가. 교연비의 지급의 논리적 정합성 및 역사성 훼손

시행규칙

제22조 ①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 교수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임.
- 교연비 제도는 교수의 고유 업무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이외의 추가 ‘교육, 연구, 학생지도’실적에 대해 사업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교수의 고유 업무인 ‘교육, 연구, 학생지도’이외에 통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를 해야 함.

- 따라서 교수는 업무 시간에 사업 수행을 위해 교수의 고유 업무 이외의 (유사)‘교육, 연구, 학생지도’업무를 수행하거나,
- 통상업무에 대해 임금과 교연비라는 사업비를 부정으로 이중 지급받도록 하고 있어,
- **교수에게 위법 행위를 종용하는, 즉 교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규칙임.**
- **시행규칙의 개정 없이는 교연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

나. 국립대학 회계법과의 충돌

국립대학 회계법

제28조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립대학 회계법은 교연비를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실적에 따라 차등하는 사업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규칙 제22조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국립대학 회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됨.**
- 따라서 **시행규칙 제22조를 개정하여야 함.**

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

시행규칙

제22조 ① 1.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⑥ ...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시행규칙은 **교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음.**
- 또한 교직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한 집행방식으로 인해 행정과 자원의 낭비가 매우 심함.

라. 교연비는 폐지되도록 설계

시행규칙

제22조 ① 1.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로 정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교연비는“0”으로 수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4. 최근 교연비 관련 논란

가. 언론보도

- '학생지도비' 받으려고...옷 바뀐 입어가며 '인증샷' 채운 교직원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4696.html#csidxee16256b0fc93ed92c188ca15082181
- 학생도 모르는 '학생지도비'...문제 학교 찾아가 보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3375>
- 횡수·날짜 조작...학생지도비 챙긴 국립대 교수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BJ1SACA>
- "카톡 1건에 수당 13만 원"..국립대 '학생 지도비' 부당 지급 적발
<https://news.v.daum.net/v/20210511172238509?f=o>
- 건강 묻는 문자 1건 보내놓고...학생지도비 13만 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5759_34936.html
-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 국립대 38곳, 교육부 감사 받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818245944903&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 권익위 "국립대 10곳서 학생지도비 94억 부당 집행"...교육부 감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4583&plink=ORI&cooper=D 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나. 황폐해지는 대학

- 국립대학 교수들은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립대학 교수의 자존감이 깎그리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함.
- 학생지도비 13만원 지급 논란의 여파로 정상적인 학생 지도가 불가능함.
-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붕괴됨.

5.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및 교육부 감사의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국립대학 교직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각종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감사를 받는 국립대학은 대학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많은 교직원들이 소명자료 작성에 매몰되어 있음.
- 학생과 교수 사이 나누었던 비공개 상담내용까지 교연비 지급 관련 감사과정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고,**
 - **교권이 무너지고,**
 - **향후 진솔한 학생 지도가 어려워짐.**

6. 요구사항

교육부는 국교조와 합의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당을 신설하고 교연비 지급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 논리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제도인 **교연비를 폐지**하고,
- 열악한 국립대학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등 교육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교연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해당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와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의 기본급을 13.7% 인상**하여야 함.
- 단기적으로는 **교연비와 관련하여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약속**하여야 함.
- 교육부는 국교조와 합의하여 교연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가. 수당 지급 관련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4조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3조는 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교원 보수 우대 원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같은 직급 일반직 공무원보다 연 평균 2160만원 적은 연봉을 받고 있음.
-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전직급),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을 대신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35조]은 교원에게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원 중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 교원만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명백한 교육공무원법의 위반사항임.

나. 수당체계 (교원 대상)

수당분류	수당세목
상여수당(2종)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3종)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수당
특수근무수당(2종)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초과근무수당(2종)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3종)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연가보상비는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만 지급)

- 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국립대학 교원은 지급받지 못함.

참고자료.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 현황

2020년 유치원 초등/중등/고등 교
원 봉급표

호봉	월급여	나이
1	1,656,000	
2	1,706,200	
3	1,757,000	
4	1,807,700	
5	1,858,900	
6	1,909,900	
7	1,960,300	
8	2,010,600	
9	2,061,700	
10	2,117,500	32
11	2,172,100	33
12	2,228,000	34
13	2,329,400	35
14	2,431,300	36
15	2,533,100	37
16	2,635,100	38
17	2,735,900	39
18	2,841,400	40
19	2,946,400	41
20	3,051,300	42
21	3,156,200	43
22	3,272,700	44
23	3,388,300	45
24	3,504,000	46
25	3,619,700	47
26	3,735,900	48
27	3,857,000	49
28	3,977,900	50
29	4,104,300	51
30	4,231,200	52
31	4,357,600	53
32	4,483,800	54
33	4,612,100	55
34	4,740,000	56
35	4,868,000	57
36	4,995,600	58
37	5,106,700	59
38	5,217,800	60
39	5,329,200	61
40	5,439,800	62
생애연봉	1,342,821,600	

2020년 국립대 교원 봉급표

호봉	월급여	나이
1	2,088,600	
2	2,154,300	
3	2,220,500	
4	2,286,200	
5	2,352,400	
6	2,424,900	
7	2,497,200	
8	2,569,900	
9	2,678,900	
10	2,787,900	
11	2,897,100	43
12	3,005,700	44
13	3,114,000	45
14	3,222,500	46
15	3,349,800	47
16	3,476,900	48
17	3,603,400	49
18	3,729,900	50
19	3,857,200	51
20	3,983,100	52
21	4,109,400	53
22	4,235,800	54
23	4,400,400	55
24	4,564,700	56
25	4,729,000	57
26	4,893,000	58
27	5,057,100	59
28	5,221,100	60
29	5,345,900	61
30	5,470,900	62
31	5,595,700	63
32	5,720,400	64
33	5,845,300	65
생애연봉	1,226,594,400	

- 교연비와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이 받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면,
 - 대학교수의 신규 임용 평균 연령은 43세고 고등학교 교사의 신규 임용 평균 연령을 32세 정도임.
 - **교수와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생애 연봉을 비교하면 교수의 생애 연봉은 1억 2천만원 적은 91% 수준임.**